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9. 12. 5. ~ 12. 20.)

의원 발의 조례안

(조례 1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명	쪽수
2019-156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156
----------	----------

발의일자	2019. 12. .
발 의 자	김종두,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걷는 길 조성의 목적, 적용범위,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걷는길 조성의 원칙 및 조성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조성원칙 :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의

2) 조성범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 강길, 독길, 등산로
-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다.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라.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 2) 전문인력의 양성
- 3)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 4)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 5) 명품길 지정·운영
- 6)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마. 명품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2. 2. ~ 12. 9.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강길, 독길, 등산로

4.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이 경우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명품길 지정·운영

6.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운영) ① 군수는 생태·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거창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가치·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산림휴양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7., 2011. 3. 9., 2011. 7. 14., 2015. 1. 20., 2018. 2. 21.>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공원녹지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

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공공디자인법)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4.05.28.]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호이동2014.5.28)
-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후단삭제 2014.5.28)
-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